

# 공공조달 네트워크 장비 발주 멘토링 제도 운영 현황



Ⅱ, 제도 운영

Ⅲ, 제도 준수 현황

IV. 관련 근거 법령

# 공공조달 네트워크 장비 발주 모니터링 제도 운영 현황

#### □ 배경

- (배경) 공공 정보통신망은 국가안보 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분야이나 공공기관의 글로벌 대기업 제조사 장비 선호로 인한 불공정 입찰 등으로 외산중심의 시장 형성
- (제도 시행) 공공부문의 외산 중심 네트워크 장비 시장을 탈피하고,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15년부터 '네트워크 장비 발주 모니터링' 제도\* 실시
  - ※ 추진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40호)" 제28조제2항, "IT네트 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020-36호)" 제5조, 제6조
  - ※ 네트워크 불공정 사업 비율('20.5 ~ '23.12): 47.7%(전체 2,013건중 961건 불공정)

## □ 제도 운영

- (모니터링 대상 및 운영) 국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1억원 이상)에 대한 사전공개 제도\* 및 불공정 사항\*\*\* 모니터링, 개선권고(의견서 등) 추진
  - \* 입찰공고전 제안요청서를 시전에 공개하여 시업자 등으로부터 불공정 규격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 \*\* 제 안요청서에 특정한 제품명 및 특수기능 요구. 조달 법제되보인적합성검증 등) 미이행 행위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서울시 등 28개) 대상 **일별 네트워크장비** 사업 제안요청서 수집 및 불공정 규격(제도 미이행/특정사 규격)\*에 대한 개선 요청

【표-1】 공공부문 네트워크 장비 사업 발주 절차 및 모니터링 내용

	사전규격서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사업 발주
발주처 (수요기관)	o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조달시스템에 공개	*	o <b>심의위원회 개최</b> 를 통한 개선권고 의견 검토/반영	*	0 제안요청서 공개 및 입찰 공고
발주 모니터링 (과기정통부)	[공정성 검토/개선권고] O 사전규격서 수집 O 불공정 규격 검토 및 개선권고 의견 개진		[수용여부 조사] O 심의위원회 규정 준수 조사 O 개선권고 의견 수용여부 조사		[최종 반영 조사] o 개선권고 의견의 입찰공고 최종반영 확인

## □ 공공조달 제도 준수 현황

- (사전공개 제도 정착)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제도의 지속적인 계도('15년~) 등을 통해 최근 4년간 모든 공공사업이 사전공개 제도 100.0% 준수('20년~)
  -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준수 사업 비율 : 60.4%('15년) → 100.0%('23년)



【그림-2】 공공부문 네트워크 사업의 사전공개 제도 준수 현황

• (불공정 사업 개선권고) 불공정 사업의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수요기관의 공정조달 인식 개선으로 공정한 사업 비율 및 불공정 규격 개선권고 수용률 지속 증가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규격서 수집 및 공정성 검토 (개선권고전)	사전규격 공개 사업 건수	399	424	599	591	2,013	
	검토전 공정 사업 건수(비율)*	202 (50.6%)	199 (46.9%)	308 (51.4%)	343 (58.0%)	1,052 <b>(52.3%)</b>	
	검토전 불공정 사업 건수(비율), → 개선권고 진행	197 (49.4%)	225 (53.1%)	291 (48.6%)	248 (42.0%)	961 (47.7%)	
수요기관	개선권고 수용 시업 건수(수용률)**	145 (73.6%)	167 (74.2%)	217 (74.6%)	189 (76.2%)	718 <b>(74.7%)</b>	
개선권고 검토	개선권고 미수용 사업 건수(비율)	52 (26.4%)	58 (25.8%)	74 (25.4%)	59 (23.8%)	243 (25.3%)	
(개선권고 후)	권고후 공정전환 시업 건수(공정률***	347 (81.2%)	366 (84.7%)	525 (87.6%)	532 (90.0%)	1,770 (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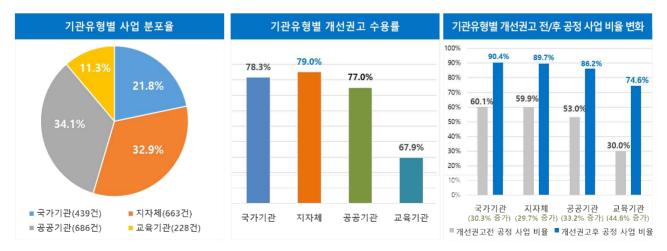
- \* 시전공개한 제안요청사에 특정제조사 독소 기능 및 제도 미이행 등 불공정 규격이 포함되지 않은 시업 건수
- \*\* 불공정 규격 개선권고에 대한 수요기관에서의 수용 사업 건수 및 수용사업 비율
- \*\*\* 불공정 규격이 포함된 시업의 개선권고 의견을 수요기관이 수용하여 공정시업으로 전환된 시업 건수(검토전 공정 시업 건수 + 개선권고 수용 시업 건수)

- (개선권고전) 수행기간 동안 불공정 사업의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수요기관의 공정조달 인식 개선으로 **사전규격 공개 사업의 공정한 사업 비율이 지속 증가** 
  - ※ 제안요청서 시전공개 사업의 공정한 사업 비율 증가 : 50.6%('20년) → 58.0%('23년)
- (개선권고후) 국가·공공기관의 발주 모니터링 제도 인지도 향상으로, 수행기간 동안 수요기관의 불공정 규격 개선권고 수용률 및 공정사업 비율이 지속 증가
  - ※ 불공정 규격 개선권고후 공정 사업 비율 : 81.2%('20년) → 90.0%('23년)
  - ※ 수요기관의 불공정 규격 개선권고 수용률 : 73.6%('20년) → 76.2%('23년)



【그림-3】 공공부문 네트워크 사업의 연차별 공정 사업 비율(개선권고 전후)

- (기관유형별 수용률) 기관별 개선권고안 수용률은 **지자체가 79.0%로 가장 높으며**, 국가기관(78.3%), 공공기관(77.0%), 교육기관(67.9%) 순으로 조사됨
  - ※ 개선권고후 공정시업 비율은 국가기관(90.4%)이 가장 높으며, 교육기관(67.9%)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시됨
  - ※ 개선권고후 공정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의 증가율은 교육기관(44.6%)이 가장 높으며, 지자체(29.7%)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4】 공공부문 네트워크 사업의 연차별 공정 사업 비율(개선권고 전후)

- **(불공정 유형) 개선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시업**의 주요 불공정 규격은 △네트워크 장비에 불필요한 메모리 요구(25.5%), △특정제품 요구(13.1%), △과도한 용량 산정(13.1%\* 임
  - \*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과기부 고시 제2020-36호) 제4조"에 따라 수요기관은 장비 도입시 적정한 용량을 산정(규모산정 지침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다수 기관이 미수용

# 【표-3】공공부문 네트워크 장비 사업 불공정 규격 개선권고 미수용 현황

구 분	상세 내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특정 제조사 및 제품	특정 제조사 및 특정 제품 명칭	12 (20.0%)	8 (14.5%)	9 (10.5%)	6 (8.5%)	<u>36 (13.1%)</u>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4 (6.7%)	2 (3.6%)	5 (5.8%)	3 (4.2%)	15 (5.5%)
특정 규격	메모리(Flash, SSD 등) 및 CPU	13 (21.7%)	12 (21.8%)	22 (25.6%)	23 (32.4%)	70 (25.5%)
	특정 제조사 프로토콜 및 기능 7(11.7		9 (16.4%)	5 (5.8%)	7 (9.9%)	29 (10.5%)
제도 미준수	과도한 용량 산정	11 (18.3%)	11 (20.0%)	9 (10.5%)	5 (7.0%)	<u>36</u> (13.1%)
	직접 생산 확인(중기간경쟁제품)	6 (10.0%)	8 (14.5%)	9 (10.5%)	1 (1.4%)	24 (8.7%)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인증	4 (6.7%)	0 (0.0%)	1 (1.2%)	5 (7.0%)	10 (3.6%)
	보안적합성검증(보안기능확인서, CC인증)	0 (0.0%)	0 (0.0%)	4 (4.7%)	7 (9.9%)	11 (4.0%)
	사전규격공개 처리 절차 미준수	0 (0.0%)	2 (3.6%)	1 (1.2%)	7 (9.9%)	10 (3.6%)
기타	특정 제조사 자격증 요구(운영·유지보수)	3 (5.0%)	1 (1.8%)	16 (18.6%)	5 (7.0%)	25 (9.1%)
	과도한/불필요한 기능 요구	0 (0.0%)	0 (0.0%)	3 (3.5%)	2 (2.8%)	5 (1.8%)
	OEM/ODM 제품 배제	0 (0.0%)	2 (3.6%)	2 (2.3%)	0 (0.0%)	4 (1.5%)
합계		60 (100.0%)	55 (100.0%)	86 (100.0%)	71 (100.0%)	275 (100.0%)

### 공공부문 네트워크 장비 사업 모니터링 관련 근거 법령

#### 법적 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784호, 2024.11.1.)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고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중략>

#### 과기정통부 고시

<u>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지침</u>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36호, 2020.7.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u>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연간 유지보수 금액 기준)의 IT네트워크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과 1억 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IT네트워크장비를</u> 구축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제5조(IT네트워크장비 사업 발주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 조사 및 제도 준수 권고
- 2.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접수·해결 지원 및 IT네트워크 장비 사업 발주·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 3. IT네트워크 장비 사업의 발주 관련 제도의 안내·교육, 조사연구 및 개선 사항 발굴
- 4. 그 밖에 IT네트워크장비 사업 발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① 수요기관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u>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u> 조달청 나라장터 또는 기관 자체발주 시스템에 <u>입찰공고 등록을 해야 한다.</u>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1.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 2. 관계법령 등에 의해 비밀을 요하는 경우
- ② 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수요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중략>
- 제7조(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①수요기관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중략>